

예산총칙

2026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924,992,058	57,749,762
일반회계	1,678,392,178	50,351,765
특별회계	246,599,880	7,397,996
공기업특별회계	179,657,454	5,389,724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5,398,241	161,947
상수도사업특별회계	62,557,693	1,876,731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11,701,520	3,351,046
기타특별회계	66,942,426	2,008,273
주택사업특별회계	194,609	5,838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6,882,125	206,464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4,996,672	149,900
교통사업특별회계	32,314,567	969,437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21,594,974	647,849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821,979	24,65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37,500	4,125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 와 같다.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 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 와 같다. (해당없음)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061,953천 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90,900,000천 원으로 한다.

제 8 조 금회 추가경정예산 제출 후 통보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국도비보조금 등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